**연구대상자 동의설명문**

Version : 2

\*동의설명문 변경 시 반드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여 표기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정보** | | | | | | |
| **IRB 승인번호** | 피험자에게 제공 시 IRB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사용 | | | | | |
| **연구제목** | (국문) OTT 콘텐츠 선택 과부하에 대한 뉴로마케팅 연구 | | | | | |
| (영문) Neuromarketing study on choice overload of OTT(Over the top) service | | | | | |
| **연구책임자** | **성 명** | **소 속** | | **직 위** | | **전공분야** |
| **김성필** | 바이오메디컬공학과 | | 교수 |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
| **전화번호** | | **팩스** | | **이메일** | |
| 010-2232-0520 | | 052-217-2727 | | spkim@unist.ac.kr | |
| ※본 연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동의서에 표기된 위험이나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 또는 연구와 관련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위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로서의 권리에 관한 문의 및 상담 : UNIST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 (Tel. 052-217-5214) | | | | | | |

\* 각각의 항목의 예시를 삭제하고 연구자 측에서 내용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  |
| ---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최근 OTT분야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선택 과부하(choice overload)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choice overload에 관한 여러 전통적 연구는 진행되어왔지만, 선택을 주저하는 기저에 깔린 심리적 반응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함.  - 대부분의 OTT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화면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선택의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소비하게 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해결해야할 문제임.  - 일반적으로 choice overload에 대한 연구에서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의사결정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있음. 더 많은 옵션이 제공될수록 기회 비용이 증가하고, 스스로 좋은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껴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옵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고, 후회(regret)의 정도가 고조될 수 있으며(Greifeneder et al., 2010) 이러한 매커니즘이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 또한, 개인 특성에 따라 choice overload가 바뀌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Subjective Knowledge(구매결정을 내릴 때 기반이 되는 지식)가 낮을수록 선택지가 많을수록 구매의사가 높다는 것이 밝혀짐 (Hadar & Sood, 2014).  - 그러나, 선택을 망설이는 심리적 반응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함. Choice overload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전제조건들은 밝혀졌지만, 선택에 대한 만족도, 선호도와 동기를 감소시키는 조건과 이유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Scheibehenne et al. 2010)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컨텐츠에서 나타나는 choice overload와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choice overload의 행동적, 인지적, 감정적 차이를 알아보고자함.  - 이를 위해, 두뇌 활동과 시선 패턴 등을 관찰, 분석하는 뉴로마케팅 접근법을 사용하여 사용자 경험 및 소비 성향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발굴하고자 함. |
| **2. 예상 참여기간 및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략의 전체 피험자 수** |
| 본 연구에 예상되는 참여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약 6개월 동안 1번, 2시간 가량의 뇌파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 수는 66명입니다. |
| **3. 피험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
| [선정기준]  - 구두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 18세이상 만 40세 이하인 자  - 일정 시간 동안 지시에 따라 행동에 제약이 가능한 자  - 정신 질환 병력이나 관련 약물 복용 경험이 없는 자  -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사항이 구별 가능한 자  - 두피 자극에 민감하지 않는 자  - 실험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 자  - 안경 대신 렌즈 착용이 가능한 자  [제외기준]  -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를 보이는 자 |
| **4. 본 연구 참여에서 종료 시까지 받게 되는 검사 및 절차** |
| 본 연구에 적합한 피험자로 선정되실 경우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1번 UNIST 104동 903호로 방문하시어 2시간 30분가량의 연속된 실험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본 연구의 참여에서 종료 시까지 귀하께서 받게 되는 검사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험 1 세부 실험 방법  * 아래의 그림과 같이 총 세 가지 과제로 이루어짐 * 친숙도 과제 (Familiarity check): 자극물로 주어지는 포스터를 보고 해당 콘텐츠를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키보드로 응답. (1: 본 적이 있음. 2: 본 적이 없음) * 호감도 과제 (Liking task): 화면에 나타나는 포스터를 보고 해당 콘텐츠를 보고 싶은 정도를 마우스로 응답. (1: 전혀 보고싶지 않음~ 11: 매우 보고싶음) * 찜과제 (List up task): 화면에 나타나는 포스터를 보고, 원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마우스로 응답. 선택한 콘텐츠는 ‘찜 콘텐츠 목록’에 포함됨. 선택에 있어서 개수는 제한하지 않음. * 피험자 모두는 [친숙도 과제] – [호감도 과제] – [찜과제] 순으로 실험에 참가함.      1. 실험 2 세부 실험 방법   - 실험 1의 [호감도과제]와 [찜과제]를 바탕으로 선택 과제의 자극물을 구성함  - 실험 2에서 진행되는 [선택과제]는 4개의 set size (6, 12, 16, 24) 와 주관적 가치 범위 (high vs. low)의 조합인 총 8개의 조건을 20번 반목하는 것으로 구성됨  - 실험군: 주관적 가치 범위 (high vs. low) / 대조군: 주관적 가치 범위 (high vs. high)  - 선택과제 (Choice task): 뇌파 장비를 착용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포스터 중 보고싶은 콘텐츠 ‘한 가지’를 마우스로 응답함. 만약 보고싶은 콘텐츠가 없다면 화면 중앙의 ‘+’표시를 마우스로 선택함.  - 선택 전 화면 중앙의 ‘+’표시가 ‘[+]’으로 표시되면, 특정 포스터에 미리 선택 표시(빨간 네모)가 나타나며, 이번 시행에서는 피험자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빨간 네모가 표시된 그 포스터를 선택해야 함 (Forced trial). 이는 비자발적 선택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자발적 선택행동의 뇌파의 baseline으로 사용할 계획임  - 선택 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아래의 질문에 마우스로 응답함. (1: 전혀 그렇지 않음 ~ 7: 매우 그렇다)   * 나는 선택을 할 때 즐거웠다. * 나는 나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한다. * 나는 내가 선택한 콘텐츠에 대해 후회한다. * 나는 내가 선택한 콘텐츠가 만족스럽다.   - 선택 과제는 총 192회 수행되며 (8개의 조건 X 20번 반복, Forced trial, 32회) 총 4번의 run 으로 나누어 진행됨. Run 사이마다 휴식을 제공함 |
| **5. 본 연구를 위해 피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
| 본 연구 기간 동안 귀하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전날 충분한 숙면을 취하시고, 과도한 카페인과 음주를 삼가는 등의 일반적인 건강법을 준수하셔야 하며 정해진 실험일정과 지시에 잘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
| **6. 본 인간대상연구의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인 측면** |
|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트래커는 Tobii 사에서, 습식 뇌파 장치는 독일의 Brain product 사에서 개발하였습니다. 모두 비침습 데이터 수집 장치로 인체에 무해함이 검증되었습니다. |
| **7.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피험자(피험자가 임부일 경우 태아, 수유부일경우 영유아)에게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위험(부작용)이나 불편사항** |
| 2시간 가량 주어지는 시각 자극에 의해 눈이 뻑뻑해 질 수 있으며, 뇌파 장비 착용한 채 1시간 이상 모니터를 보는 동안 경미한 어지러움 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제 사이 마다 휴식시간이 주어질 예정이며, 실험 동안 참기 힘든 불편함이 있을 시 그 즉시 실험을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
| **8.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이익이 없을 경우 그에 대한 명시)** |
|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귀하께서 실험참가비 외에 기대되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통해 얻은 정보는 ‘OTT 콘텐츠 선택 과부하에 대한 뉴로마케팅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9. 본 연구에 관련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험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 방법** |
| 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관련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에서 진단 후 치료가 가능하며 비용 및 보상은 학칙에 의거하여 적절히 제공될 것입니다. |
| **10.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금전적 보상 유무, 참여 정도에 따른 조정 정도 및 피험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 |
|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금전적 보상으로는 실험참가비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40,000원이 방문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 **11. 연구 참여의 제한**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동의 없이도 본 연구의 참여로부터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연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  B. 연구 참여와 관계 없는 중대한 질환이 발생함 |
| **12. 피험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 /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경우라도 자유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단, 이와 같은 철회가 연구참여 개시 이전에 이루어지고 시험참가에 대한 보상이 있었던 경우 보상금의 반환 여부)** |
| 본 연구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귀하에게 달려있습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동의철회를 통해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 중단을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귀하의 결정은 향후 참여한 시간 만큼의 실험참가비를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동의철회의 이유에 대해 묻겠지만 귀하가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동의철회 시점에서의 연구결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귀하에게 동의를 구할 것이나 이 역시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귀하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
| **13.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대책(이용 ․ 관리 ․ 파기)** |
|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가비 지급을 목적으로 귀하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서를 작성할 것이며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되며 연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언제든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14. 신분의 비밀보장(자료의 열람 권한 설정 및 보관, 관리, 폐기 및 연구 결과 발표 시 피험자의 신원 보호)** |
|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수집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열람 될 수 없습니다. |
| **15. 본 연구의 지속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얻어지면 적시에 피험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
| **16.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연구와 관련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접촉해야 하는 사람과 연락처** |
| 본 연구의 참여와 관련하여 문의 및 불만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성명: 이승지, 연락처 (☎) 052-217-2739 |

**연구대상자 동의서**

|  |  |
| --- | --- |
| **연구과제명 :** | OTT 콘텐츠 선택 과부하에 대한 뉴로마케팅 연구 |
| **IRB 승인번호 :** | UNISTIRB-21-35-C |

본 동의서에 기술 된 목적 이외의 다른 연구에 본인의 연구데이터(샘플) 또는 검체를 2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
| --- | --- |
|  | **추가적인 동의 없이, 데이터(검체)의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상태로 이용** |
|  | **추가적인 동의 없이, 데이터(검체)의 개인식별정보를 코드화하여 피험자 식별이 추적 가능한 상태로 이용** |
|  | **추가적인 동의 없이, 데이터(검체)의 개인식별정보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 이용** |
|  | **다른 종류의 연구에 사용할 경우, 본인의 추가 사전 동의 후 진행 바랍니다.** |
|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본인과 연구자 및 UNIST 사이에 본인의 연구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본인은 연구 관련자로부터 이 동의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직접 읽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무런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며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을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날짜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  |  |  |  |
| --- | --- | --- | --- | --- |
| **피험자** | (성명) | (자필서명) | (서명일) | |
| **법정 대리인(필요 시)** | (성명) | (자필서명) | (서명일) | |
|  | (피험자와의 관계) | |  |  |
| **입회인(필요 시)** | (성명) | (자필서명) | (서명일) | |
| **연구책임자** | (성명) | (자필서명) | (서명일) | |

|  |
| --- |
| **본 연구는 UNIST IRB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동의서만을 이용합니다.** |

**피험자 동의 절차 안내**

다음은 연구자가 피험자로 동의를 구할 때 준수해야하는 원칙입니다. 피험자 동의서 작성 시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페이지는 연구자에게 피험자 동의 절차를 안내 하기 위한 목적임으로 **해당 페이지는 제출하지 마세요.**

※. 관련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11호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 17조

|  |
| --- |
| 1. 연구자는 피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를 문서화 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동의를 얻기 전에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피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서식을 포함하여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서면 정보들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또는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3. 동의를 얻기 전에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피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간대상연구의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할 경우, 피험자 또는 대리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4. 피험자가 인간대상연구에 참여 또는 참여를 지속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5. 동의서 서식을 포함하여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피험자, 법정대리인 또는 공정한 입회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6. 동의서 서식을 포함하여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 피험자나 법정대리인의 법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또는 이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7. 동의서 서식을 포함하여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 연구자가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제받거나 또는 이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8.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피험자(또는 법정대리인)와 동의를 받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동의서 서식에 서명하고, 자필로 해당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피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자필로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 동의서의 사본이나 기타 피험자에게 제공된 문서 정보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